

#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차)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달라지는 사항(붙임. 단시간 청년 노동자 운영지침)

구분	당 초	변 경	개정 사유
참여기업 자격(4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청년 노동자를 채용 (고용보험 취득신고)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 (<u>중소기업확인서 必</u>)</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 ----- ----- <u>(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 공인확인서 必)</u></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사업 신청자 편의제공</li><li>* 소상공인확인서 자체가 중소기업 인증</li></ul>
참여노동자 자격(5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나.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lt;신설&gt;</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나. 지원제외 - ----- <u>(단, 공고일 이전에 휴업신고한 자는 가능)</u></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휴업 신고한 청년 노동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li></ul>
채용시 지원 원칙(6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사업 참여신청시 참여노동자는 <u>4대 보험</u>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사업 참여신청시 참여노동자는 <u>4대 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u> <u>여야 함</u></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청년노동자 수혜범위 확대를 위해 참여자격 개정</li></ul>
서식 <8p~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u>서식 1 ~ 6</u></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u>서식 1 ~ 6</u></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자격 변경에 따른 일부 개정</li></ul>

##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단시간 청년 노동자에 대한 소득 보전과 일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노동자 추가고용 분위기 확산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청년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 제주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39세 청년

### 제외 대상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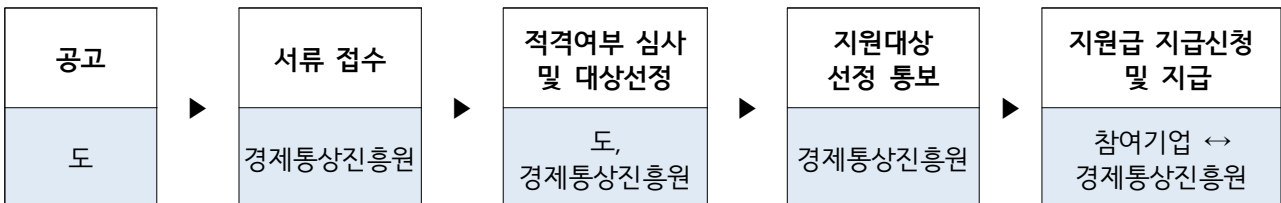
▲소비·향락업체 등 업종,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기타 사치·투기 조장 및 도박 등 일부 부적합 업종의 사업장, ▲노사분규사업장 등 ※ **별첨 확인**

### □ 지원내용:

- 청년 채용시 참여청년은 **2025.1.1.이후**에 사업장에 채용된 자여야 함
-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 근무 1시간당 5천원 지원(일 최대 4시간·2만원)
  - 월 최대 20일, 4개월 동안 지원(월 40만원, 4개월 160만원)

\* 기업당 별도 지원인원의 제한은 없으나, 추후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 지원절차



## 2. 사업 참여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5년 7월 7일(월)~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접수, 예산 소진시 접수마감)**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메일 접수 <서식 1,2,3,4 및 구비서류>
  -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방문 접수시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메일: [234dmswl@jba.or.kr](mailto:234dmswl@jba.or.kr)

구분	접수처
이메일	<a href="mailto:234dmswl@jba.or.kr">234dmswl@jba.or.kr</a> [단시간 청년노동자사업-기업명] ※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 (064-805-3396)

□ 구비서류

<< 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 >>	
제출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식1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사업 참여신청서</li> <li>· 서식2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동의서(기업)</li> <li>· 서식3 청렴이행서약서(기업)</li> <li>·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li> </ul>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li> <li>· 지방세 납세증명서·</li> <li>·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li> <li>·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별 모두 제출)</li> <li>·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산재보험 확인서류)</li> <li>· 4대보험 완납 증명서(사업장 4대보험 체납여부 확인서류)</li> <li>·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구분:고용종료,기간:1년) ※온라인발급: 고용산재보험토달서비스</li> </ul>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계약서 사본</li> <li>· 근로자 주민등록 등본 (청년 주민번호포함)</li> <li>· 사업자등록여부사실증명서 (*정부24 또는 홈택스)</li> </ul>

3. 사업 참여요건(기업 및 근로자 세부요건)

□ 기업 참여요건

○ 지원대상

-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30시간 이하 청년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취득신고)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必)  
 ※ 직전연도 1년간의 매출을 기준으로함

○ 제외대상

-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

① 소비·향락업체 등 업종\*

\* 소비·향락업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업종

②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당해 파견업체, 공급업체 내에서의 근무자는 가능

\*\* 근로자 파견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따라 대상 근로자를 타인(다른 사업주)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원 불가

③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 일반유희 주점업(56211), 무도유희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④ 기타 사치, 투기조장, 도박 등 일부 부적합 업종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 참여제한기업

- 신청일 기준 4대 보험 체납 및 미가입 사업장, 지방세 체납 사업장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 조치 실시 중인 사업장
- 신청일 기준 노사분규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등
- 부정수급(정부 또는 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포함) 등으로 제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업장
-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근로자로 정부, 지자체 등에서 인건비성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

□ 참여 청년 노동자 참여요건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신청일 현재 제주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 조례」 제3조: “청년”이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

○ 지원제외대상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공고일 이후에 동일 기업 퇴직 후 재입사한 자
- \* 사업장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구분:고용종료) 제출
-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단, 공고일 이전에 휴업신고한 자는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고용보험 강제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4. 참여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자격조회 및 서류 심사 후 참여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

## 5. (사업 참여 선정기업)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선정통보 후 안내

지원금 신청접수: 2025년 8, 10, 12월의 1일 ~ 10일

○ 신청방법: 메일 제출 <붙임. 운영지침 서식 5, 6>

○ 메일: 234dmswl@jba.or.kr

지원금 지급: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

※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6. 기타사항

참여 신청서의 모든 제출 서류는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 및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에 따릅니다. ※ 별도 첨부파일 확인

## 7. 문 의 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 관 명	연락처
참여 신청 접수 및 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육성처 기업성장팀	064-805-3396
단시간 청년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일자리과	064-710-3795



<서식 2>

**자격확인 및 사업장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기업)**

**1. 참여자격 확인**

상기 사업장은 『단시간 청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아래와 같이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0)	
	해당	비해당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등 여부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체납 여부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중인 사업장 여부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임금체불 사업장 여부		
부정수급(타 보조금 사업 포함) 등으로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사업장 여부		
동일 근로자로 정부 또는 지자체 인건비 지원사업의 중복 수령 여부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단시간 청년 노동자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활용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사업 참여 선정·관리,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 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여부 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 등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지역 내 고용 발전을 위한 일자리 통계 목적으로 활용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단시간청년노동자일자리』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 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 . .

기업명	대표	(서명)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 별첨 1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

### □ 중소기업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

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대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별표 1] <개정 2017.10.17.>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 (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구분	내용
<p>청소년 유해업소</p>	<p>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p> <p>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li> <li>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li> <li>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li> <li>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사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li> <li>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li> <li>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li> <li>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li> <li>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li> <li>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li> <li>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li> <li>11)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li> </ol> <p>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li> <li>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li> </o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li> <li>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li> <li>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li> <li>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li> <li>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악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li> </ul>
풍속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li> <li>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li> <li>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li> <li>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li> <li>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li> <li>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li> <li>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li> </ul>
사행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li> <li>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li> <li>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li> <li>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li> </ul> </li> </ul>

구분	내용
	<p>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p> <p>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개조하거나 수리하는营业을 말한다.</p> <p>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营业을 말한다.</p> <p>5. "투전기"란 동전·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 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p> <p>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p>